



제 333 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 2025년 3분기 간주처리예산 보고

2025. 11.

민생노동국

# **2025년 3분기(제7차) 간주처리예산 보고**

---

## **□ 보고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
- 보고내용 : 2025년 3분기 민생노동국 간주처리 내역
  - 간주처리내역 : 총 1건, 6,919,000천원

## **□ 간주처리 상세내역 및 사유**

- 제7차 : 1건, 6,919,000천원
    -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6,919,000천원)
      - 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할인보전금 및 발행 수수료 지원을 통해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여 민생 경제 지원하는 사업으로, '25. 9월 행정안전부 국고보조 교부 결정에 따라 간주처리
-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3006(2025.9.1.)호

**붙임 : 간주처리 세부 내역 및 근거 서류(교부결정 통지 공문) 각 1부**

**불임****간주처리 세부 내역****○ 제7차 간주처리 세부내역****- 세입예산**

(단위:천원)

세입과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소 계	1,051,643	6,919,000	7,970,643
511-01 (국고보조금)	1,051,643	6,919,000	7,970,643

**- 세출예산**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소 계				(X) -	(X6,919,000) 6,919,000	(X6,919,000) 6,919,000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지역상권 활력 강화	서울지역사 랑상품권 발행, 운영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308-01)	(X) -	(X6,919,000) 6,919,000	(X6,919,000) 6,919,000

## ○ 제7차 간주처리 내역 알림

마음이 드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5 회계연도 제7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알림

**10개** 실국 소관 **32개** 사업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를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송부합니다.

\* 사업부서에서는 확정된 간주처리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붙임 : 2025 회계연도 제7차 간주처리 내역 1부.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사과장), 양성평등담당관, 아동담당관, 가족담당관, 주택정책과장, 일대주택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도로시설과장, 교량안전과장, 도로관리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재난안전예방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물을보호과장, 친환경차량과장, 친환경건물과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환경기획부장), 어르신복지과장, 갈열병관리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주무관     정연천     예산총괄팀장     최경숙     예산담당관     10/10  
김설희

참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1419     ( 2025. 10. 10. ) 결수     소상공인정책과-12973     ( 2025. 10. 10. )

우 045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15     / 전송 02-768-6825     / [yo0617er@seoul.go.kr](mailto:yo0617er@seoul.go.kr)     / 부동공개(5)

## ○ 교부결정 통지



### 행 정 안 전 부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제2차 추경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반지원)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불임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시·군·구 배정액이 있는 시·도에서는 예산 배정액을 시·군·구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일반지원)

나. 교부처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교부액 : 금552,754,000,000원(금오천오백이십칠억오천사백만원) ※ 불임 참조

라. 교부내용 : 할인판매 비용 관련 자금 교부

마. 예산과목 : 1349-306-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불임 ('25)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2차 추경 일반지원) 1부. 끝.

### 행정안전부장관

관인생략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소상공인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중소상공인지원과장), 대구광역시장(경제정책관), 인천광역시장(소상공인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경제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소상공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기업지원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소상공인과장), 경기도지사(지역금융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경제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소상공인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경제정책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일자리민생경제과장), 전라남도도지사(소상공인정책과장), 전라북도도지사(민생경제과장), 경상북도지사(소상공인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소상공인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경제정책과장)

지역경제과 전급 2025. 9. 1.

행정사무관

조관희

장

신지혜

### 협조자

시행 지역경제과-3006 (2025. 9. 1.) 접수 소상공인정책과-11060 (2025. 9. 1.)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조읍6로 42 / www.mois.go.kr

전화 044-206-3967 /전송 044-204-8975 / jwc645@mail.go.kr / 비공개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불임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2차 추경, 일반지원)

□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9. 1. ~ 12. 31.

○ 사업규모(할인판매 비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총 지원금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지방자치단체	552,754	552,754	-	

○ 국고보조 비율 :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3. 참조

○ 사업내용 :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 예산과목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10 일반지방행정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1300 지방재정경제	1349 지역경제 지원	306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30-01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 할인판매 비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고보조금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계	금회 교부액		
계	552,754	552,754	-	
서울특별시	6,919	6,919	-	
부산광역시	66,947	66,947	-	
대구광역시	23,584	23,584	-	
인천광역시	19,663	19,663	-	
광주광역시	50,270	50,270	-	
대전광역시	20,183	20,183	-	
울산광역시	8,840	8,840	-	
세종특별자치시	2,376	2,376	-	
경기도	79,390	79,390	-	
강원도	18,007	18,007	-	
충청북도	31,496	31,496	-	
충청남도	49,864	49,864	-	
전라북도	47,021	47,021	-	
전라남도	29,054	29,054	-	
경상북도	49,109	49,109	-	
경상남도	34,251	34,251	-	
제주특별자치도	15,780	15,780	-	

- 위의 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금 교부조건, 「2025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5. 9. 1.  
행정안전부장관

## 보조금 교부조건

### 【 일반사항 】

-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은 지역사랑상품권 7%~15% 할인 판매비율 보전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지원되는 국비에 대해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사랑상품권 7%~15% 할인 판매에 함께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분	할인율	국고보조비율		비고
		국비	지방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7%	28.5%	71.5%	
수도권	10%	50%	50%	
비수도권	13%	61.5%	38.5%	
인구감소지역	15%	66.6%	33.4%	

- 보조사업자는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하며, 교부된 보조금을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조기에 판매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흐름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 【 보조사업 수행시 】

-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다음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할인율 7% 설정 / (수도권) 할인율 10% 설정 / (비수도권) 할인율 13% 설정 / (인구감소지역) 할인율 15% 설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상기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 추가 할인율은 캐시백 지급 방식으로 운영하고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하여 별도 할인율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의심거래 감시, 신고 포상금제 운영, 상품권 유통 현장점검 등 부정유통 관리·감독
  - 「2025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준수
-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 보조사업 정산시 】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 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2.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다음의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 【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

-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